

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57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

1. 개정이유

-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57조 및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」 제87조의 2가 개정되어 2021. 4. 17.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관련 서식을 정비함

2. 주요내용

- 새롭게 도입된 법 제57조제1항 단서의 확인절차를 신청서의 제출, 가정법원의 심리, 친생자출생의 신고, 등록부 정정 신청 등, 등록부 정정 방법 등 조항에 각 추가함(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)
- 개정법 제57조제1항 단서 조항에 의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출생신고 시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으로 출생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)
- 확인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법 제57조제1항 단서와 같은 조 제2항의 차이에 대해 인지하고 확인 사건 심리를 할 수 있도록 법 제5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출생신고의 경우 출생자의 등록부에 모(母)도 기록됨을 명시하고, 구체적 출생신고 처리절차를 명시해 입법취지에 따른 통일적 사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의2 신설)

-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서식과 가정법원의 확인서 서식을 개정함(별지 제1-1호, 제1-2호, 제2-1호, 제2-2호 서식)

**3.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57조에 따른 가정법원의
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**

붙임과 같음

4. 신·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57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

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57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법 제57조제2항” 을 “법 제57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사건본인의 모의 성명·등록기준지·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” 을 “법 제57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가정법원의 확인을 구할 수 있” 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사건본인의 모의 성명·등록기준지·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” 을 “확인 신청 사유가 법 제57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을 수 있” 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법 제57조제2항” 을 “법 제5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신고” 를 “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출생신고” 로 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 (친생자출생의 신고 처리) ① 법 제5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적법한 출생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처리한다.

1.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리 후 출생자의 등록부 작성 시 부와 모를 함께 기록
 2. 출생자가 제3자로부터 「민법」 제844조의 친생자 추정을 받고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불수리
 3. 출생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는 수리하되, 특종신고 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
- ②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적법한 출생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수리 후 출생자의 등록부 작성 시 부를 기록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법 제57조제2항” 을 “법 제57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” 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법 제57조제2항” 을 각각 “법 제57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” 으로 한다.

별지 제1-1호, 제1-2호, 제2-1호, 제2-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예규는 2021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 (신청서의 제출) ① <u>법 제57조 제2항의 가정법원 확인을 신청하려는 부는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 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를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제1항의 신청서에는 신청인이 사건본인의 모의 성명·등록기준지·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하고,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와 신청인과 사건본인 사이에 혈연관계가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, 가정법원의 관할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1통 또는 주민등록표등·초본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3조 (가정법원의 심리) ① 가정법원은 신청인이 <u>사건본인의 모의 성명·등록기준지·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</u>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청인과 사건본인 사이에 혈연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</p> <p>② ~ ⑤ (생략)</p> <p>제4조 (친생자출생의 신고) ① <u>법 제</u></p>	<p>제2조 (신청서의 제출) ① <u>법 제57조 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② -----</p> <p><u>법 제57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가정법원의 확인을 구할 수 있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제3조 (가정법원의 심리) ① -----</p> <p>----- <u>확인 신청 사유가</u></p> <p><u>법 제57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을 수 있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 (친생자출생의 신고) ① <u>법 제</u></p>

57조제2항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으로 출생증명서를 갈음한다.

② 제1항의 신고를 하는 경우 출생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출생신고서에 출생장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.

<신 설>

제5조 (등록부 정정 신청 등) ① (생 략)

② 시·읍·면의 장은 제1항의 경우에 법 제57조제2항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작성된 등록부의 기록과 법 제57조제4항의 출생

5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

-----.

②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출생신고

-----.

제4조의2 (친생자출생의 신고 처리) ① 법 제5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적법한 출생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처리한다.

1.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리 후 출생자의 등록부 작성 시 부와 모를 함께 기록

2. 출생자가 제3자로부터 「민법」 제844조의 친생자 추정을 받고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불수리

3. 출생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는 수리하되, 특종신고 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

②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적법한 출생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수리 후 출생자의 등록부 작성 시 부를 기록한다.

제5조 (등록부 정정 신청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 법 제57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-----

신고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부정정신청서 여백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.

제6조 (등록부 정정 방법 등) ① 법 제57조제4항의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법 제57조제2항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첨부하게 하고, 출생신고서 양식(「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」 별지양식 제1호) 중 “기타사항란”에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출생신고를 한다는 뜻을 기재하게 하여 수리한다.

② 출생신고를 수리한 시·읍·면의 장이 법 제57조제4항에 따른 등록부정정신청을 받은 때에는, 제5조제2항에 따라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 후 동일인이 틀림 없으면 법 제57조제2항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.

③ ~ ④ (생략)

-----.

제6조 (등록부 정정 방법 등) ① -----
----- 법 제57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-----

-----.

② -----

----- 법 제57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-----.

③ ~ ④ (현행과 같음)

별지 제2-1호 서식

○ ○ 법 원
확 인 서

20 호기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

신청인 성 명 (주민등록번호: -)
주 소

사건본인 성 명
출생연월일
성 별
등록기준지
주 소

사건본인의 모 성 명 (주민등록번호: -)
(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)
등록기준지(외국인인 경우 국적)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건본인 ○○○의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모가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장애가 있음을 확인한다.

년 월 일

판사

인

별지 제2-2호 서식

○ ○ 법 원
확 인 서

20 호기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

신청인 성 명 (주민등록번호: -)
주 소

사건본인 성 명
출생연월일
성 별
등록기준지
주 소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본인 ○○○의 모의 성명·
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
모가 공적 서류·증명서·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음을 확인한다.

년 월 일

판사

인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	
연락처	(02) 3480-1771